

상무부, 경영자집중(기업결합) 주요 심결사례

<주중대사관 박제현 공정거래관>

중국 상무부(반독점국)가 최근 시정조치(금지, 제한조치 부가)한 안건 중 우리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“MS, P3”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< 주요 내용 >

□ MS의 Nokia 휴대폰사업 인수 안건(MS 안건)

- 상무부는 본건이 중국휴대폰시장에서 경쟁을 배제·제한할 가능성(즉, 특허 남용우려)이 있다고 판단,
 - 당사회사(MS, Nokia)와의 제한조치협의를 통해,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한조건을 부가(즉, 조건부 승인)하는 결정(2014.4.8)을 하였음

□ 글로벌 해운 3사의 네트워크센터 설립 안건(P3 안건)

- 상무부는 본건이 국제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(아시아-유럽항로)시장에서 경쟁을 배제·제한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4.6.17. 금지(불허)결정하였음

1. MS의 Nokia 휴대폰사업 인수 안건

가. 심사개요

- 중국의 상무부(반독점국)는 "MS의 Nokia 휴대폰사업 인수"에 대해 심사한 결과, 당해 경영자집중(이하 기업결합)이 관련시장*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(즉, 특허남용 우려)이 있다고 판단,
 - 심사과정에서 당사회사와 경쟁제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

* 상품시장은 스마트폰 시장,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OS 시장,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관련 특허 라이선스시장으로 확정하였으며; 지역시장은 중국시장

□ 이와 관련, 상무부는 기업결합 후 MS의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OS, 모바일 스마트 단말기 관련 특허와 Nokia가 보유한 모바일 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야기할 수 있는 특허남용문제가 중국 스마트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함.

○ 그 결과, 상무부는 MS가 자신의 Android 프로젝트 라이선스로 중국 스마트폰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,

- Nokia의 경우, 표준특허 실시료 기준을 비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중국 스마트폰시장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,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원가를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.

나. 심사결정(제한조치 부가)

□ 상무부(반독점국)는 당사회사가 제출한 승낙(즉, 구제방안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조건을 부가(즉, 조건부 승인)하였음.

<제한조건 주요내용>

* MS : 표준특허 FRAND원칙 준수, 비표준특허에 대한 비 배타적 허여/ 특허료가 이전보다 높지 않을 것 등

* Nokia : 표준특허 FRAND원칙 준수,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 끼워 팔기 금지, 원칙적으로 기존 건당 특허료를 벗어나지 않을 것 등

2. 글로벌 해운 3사의 네트워크센터 설립 안건

□ 심사경위

○ 상무부(반독점국)는 "글로벌 해운 3사(덴마크 Maersk, 스위스 MSC, 프랑스 CMA CGM)의 네트워크센터 설립(이하 P3)"에 대해, 법정절차에 따라 심층적으로 심사하였음

- 심사과정에서 상무부는 유관기관/단체 및 관계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당사회사와 경쟁제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당사회사가 최종 제출한 구제방안이 이를 해결할 수 없었음

□ **관련시장 확정**

- **상품시장**은 국제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시장으로, **지역시장**은 아시아-유럽항로, 태평양항로와 대서양항로시장으로 각각 확정함.
- 다만, 그 중 아시아-유럽항로와 태평양항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함.

□ **경쟁제한효과 분석**

- 상무부는 기업결합 후, “P3” 이 당사회사와 긴밀한 연합경영을 형성하여, 아시아-유럽항로 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배제·제한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

□ **심사결정(금지조치)**

- 상무부(반독점국)는 이 기업결합이 당사자의 긴밀한 연합운영을 형성, 아세아-유럽항로의 컨테이너정기선 운송서비스시장에 경쟁을 배제·제한하는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,
- 당사회사가 예외인정 요건(즉, 본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현저히 크거나 사회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)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기업결합을 금지(불허)하기로 결정하였음.

3. 대사관 지원사항

- 상무부 심사과정에서 우리업계 의견전달, 대응방안 모색, 양국 간 심사 공조 등을 적극 지원하였음
- 그 결과, 상무부가 MS건은 제한조치 부가, P3건은 불허(금지조치)함으로써 우리업계가 우려하던 폐해(예, 휴대폰 특허료 과다인상*/해운운임의 과다인상 등)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함

* 우리업계는 휴대폰 관련특허비용을 연간 최소 약 5억\$(약 5,200억 원 : 연간생산량 약 5억대 × 최소 1\$ 인상 가정) 정도 절감이 기대됨